

저축기간과 저축금액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외의 저소득층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5만원	10만원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 (2년)	240만원 +이자	480만원 +이자	180만원 +이자	360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810만원 +이자

※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줄임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Q&A

Q 신청하면 누구나 통장사업 참가자로 선정되나요?

A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금융정보 조회,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자산상태에 대해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자산기준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에 참가하면 저축만 하면 되나요?

A 본 사업은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뿐만 아니라 금융교육이나 특별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저축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야 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느 은행에서 개설하나요?

A 본 사업과 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에서 개설하며, 타 은행에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 문의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사업공고

- 서울시홈페이지 : www.seoul.go.kr
- 서울사회복지재단홈페이지 : www.welfare.seoul.kr

서울시와 함께 희망을 2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립니다.”

1,000가구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15. 4. 30(목)~5. 20(수)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년/3년간 매월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수급자) 또는 1/2금액(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① ~ ③ 또는 ① ~ ④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고일(2015. 4.30)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규모별 아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1,234,562	40,385	17,062	40,810
2인	2,102,096	68,277	55,434	69,211
3인	2,719,376	88,366	87,560	89,365
4인	3,336,658	108,764	115,882	109,995
5인	3,953,940	129,219	142,729	130,736
6인	4,571,220	148,355	164,081	150,531
7인	5,188,502	169,457	186,731	172,273
8인	5,805,784	190,665	209,274	194,056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신청자격 적격여부는 전체 가구원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조회 후 자격여부를 최종판단합니다.

- 공고일(2015. 4.30)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72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공고일(2015. 4.30)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포세대(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 포기)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별도서식) 1부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1~5 서류 및 지역 공동체 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확인서 (별도서식) 1부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

선발일정

- 신청접수 2015. 4. 30(목) ~ 5.20(수)
- 서류심사 2015. 5. 26(화) ~ 7. 8(수)
- 면접심사 2015. 7. 18(토) ~ 7.19(일)
- 약정체결 2015. 8. 15(토) ~ 8.16(일)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5년 8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 기간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합니다.
- 저축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사·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사용용도



교육비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교육 등



주거비
주택구입 및 임대보증금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